

보도 시점 2025. 10. 31.(금) 12:00 배포 2025. 10. 31.(금) 10:00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깜빡했다면 12.1.까지 꼭 신청!

-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올해는 12.1.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정기신청(5월)	기한 후 신청(6개월)	신청 기한 경과
2025.5.1.~6.2.	2025.6.3.~12.1.	2025.12.2. 이후
산정액의 100% 지급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 불가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1.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10.이후 '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시기) 정기 신청(5월)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 12.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6.1.잔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평일 9시~18시) 또는 보이는 ARS(평일 및 휴일 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체험수기) 아울러,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1.17.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체험수기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총 시상금 1천만 원) 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총괄>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책임자	과 장	이상걸 (044-204-3801)
		담당자	사무관	장은경 (044-204-3812)
<협조>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담당자	사무관	임미정 (044-204-2592)

참고 1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20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가구 유형별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

① **홀벌이가구란**, 배우자¹⁾·18세미만 부양자녀²⁾·70세이상 직계존속³⁾ 중 1명이상 있는 가구

1)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3백만원 미만

2),3)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함)

②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③ **단독가구란**, 배우자·18세미만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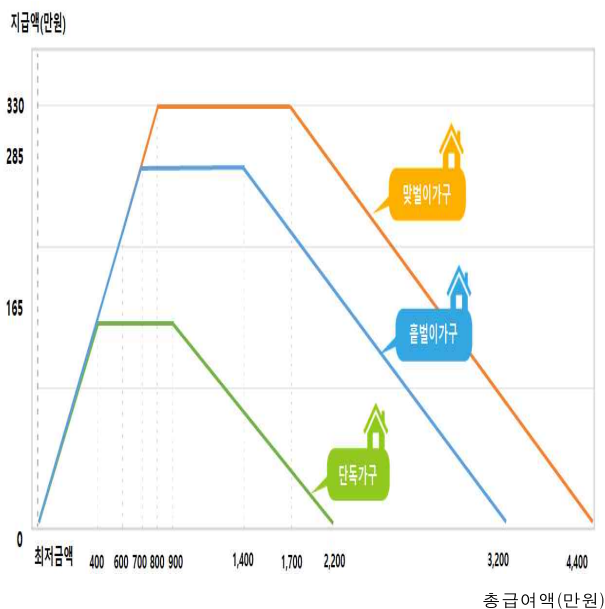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① 홀벌이가구	② 맞벌이가구	③ 단독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 (부부 합산)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24년도 중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재산기준 (소득발생연도 61기준)	가구원 전체의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은 장려금 50% 지급)
-----------------------	---

□ 지급액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참고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우편 안내문	② 모바일 안내문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세요 - 왼쪽 그림(QR코드)을 비추세요 -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세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전화·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③ 자동응답시스템	④ 신청대리
1544-9944 전화걸기 주민등록번호 # 입력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신청 ① 번 휴대전화번호 # 입력 계좌수령 ① 번 현금수령 ② 번 은행코드 # 입력 계좌번호 # 입력 (본인 명의) 자동신청 동의 신청 완료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2번 '일반 전화상담' 선택 세 무 서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2번 "음성 ARS" 선택 3번 "장려금" 선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로그인](#)

참고 3

주요 문답 사례

사례 1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주택 전세보증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실제전세금이 적은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사례 3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입력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

-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